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보이 1436 (전화번호 429)	전결규정	조항
처리기간	결 제 자		
시행일자	보건사회국장	제1부서장	
보존년월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보	보건제2과장	합	법무과장 (심사반장재) 법제처장
소	식품지도국장	[Handwritten Signature]	
기	[Handwritten Signature]		
관			
기안책임자	이 동 권	조	
경유 수신 참조	우신처 참조	발 신	
제 목	식품위생감시원 (임시직) 근무지침		
1. 대안위 식품시장에 상주근무하는 식품위생감시원 의 복무기강의 확립 및 효율적인 부정식품단속을 기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식품위생감시원 근무지침을 제정 시안하니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할 것 첨부 식품위생감시원 근무지침 1부 끝.			
수신처. 서사. 20-28			

법무심사
 법무과장
 법제처장
 심사자
 홍

0-203-1-8A

1969. 11. 10. 승인

142 190mm×268mm 백상지 50g/m²

(서울특별시립 삼성 직업보도원 인쇄)

식품위생감시원(입시력) 근무지침

제1조 (목적) 식품위생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부정식품의 단속에 관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따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감시원의 근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의한다.

제2조 (근무지) 감시원은 시장의 명예 의거 본청 및 각구별전소에 주재하여 대안위 식품시장 내에 상주 근무한다.

제3조 (임무) 감시원의 근무는 다음의 같다.

1. 감시원은 지정된 근무지(대안위 식품시장) 내의 부정식품 색출단속
2. 시장 내 유통 부정식품을 통한 제조원의 적발 및 정보수집 활동
3.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식품의 적발단속

제4조 (준수사항) 감시원은 전조 각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각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시원은 감시원 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하고 별명이 없는 한 각기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무지 내의 단속과 관련하여 근무지들이 이탈·추구단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복명을 한후 별도
지시를 받아 단독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현저히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즉시
보고한다.

3. 우려가 제조업소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을 시는 반드시
인지 보고를 한후 지시에 의거 단독
에 임하여야 하며 보고 이전에 해
영소에 통보하거나 인지사항이 누락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감시원의 신분이나 활동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어 감시활동에 지장
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주의
하여야 한다.

5. 감시구역내에 노출된 부적식물을
방치하고 단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로 인정 직무태만으로 간주
한다.

제5조 (보건소장 감독)

1. 보건소장은 주래감시원의 임무 (이 지침의

업무 범위) 를 성실히 수행시키기 위
하여 = 감시권의 복무와 기강을 지시
감독한다

2. 보건의 주재 감시원은 보건의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 위에 규정된 임무를 성
실히 수행한다

3. 주재 감시원은 타 임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제 6 조 (근무지 지정) 시장은 감시원의 근무
지를 지정하고 또한 수시 교체할 수
있다.

제 7 조 (단속) , 다음 식품시장에 감시원을
상주케 하고 단속한다

(1) 방산시장	} 단정 감시원
(2) 동대문시장	
(3) 남대문시장	

(4) 청량리 시장 ... 동대문구 주재 감시원

(5) 김유(미아)시장 ... 성북구 주재 감시원

(6) 중랑 시장 ... 성동구 주재 감시원

(7) 영등포시장 ... 영등포구 주재 감시원

(8) 신촌시장 ... 서대문구 주재 감시원

(9) 용문시장 ... 용산구 주재 감시원

2. 불건소장은 필연에 따라 지정된 시장
이외에도 관내 시장을 지정. 적일
로 상주 단속이 할수 있다.

이경우 추가로 지정한 근무지 (식품시
장)는 시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 8 조 (실적평가) 1. 감시원의 근무실적은
다음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1) 1급상당 (과장보은 사항)

가. 불건법외 단속에 관한 특별조
치법 위반의 부정식품 제조자
적발

나. 식품위생법 위반자로서 이의
유리한 부정 불량식품 제조자
적발

(2) 2급상당 (과장보은 사항)

식품위생법 위반자 적발 (포식
기준, 용기표장 위반 등)

(3) 3급상당 (계장보은 사항)

가. 부정식품류의 현장 폐기 등
기타위반 단속 실적

나. 식품의 날관, 진열상태 등의 위
반자 적발

2. 실적보고 : 주간 실적은 매주 토요일 12시까지 보고하고 월간 실적은 익월초에 보고한다.

3. 2점 이상에 대한 실적보고서는 관계 증빙서류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조직) 1. 규상상의 위반과
년 4건 이상 적발

2. 2점 상상의 위반자는 년 10건 이상 적발

3. 이상의 실적이 없는 자외 전기 제 4조 준수 취척을 위반한 자는 시말서를 징취한다.

4. 시말서를 연내 3회 이상 징취한 감시원에 대하여는 서훈특별사건위원 규정 제 17조 규정에 의거 하면 조치한다.

5. 남진소 주재 감시원의 전기 위반 사유에 대한 시말서는 남진소장이 징취 보고한다.

제 10 조 (목적) 감시원은 자기 담당 구역내

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함 물의가 야기

뒤는 보인 범죄 위반자를 타기완
에 의하여 적반회명을 때에
평소 감시소홀에 대한 책임을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7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